

■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을 거부·방해	법 제54조 제2항제1호	300	400	500

또는 기피한 경우				
나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신고한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2호	300	400	500
다.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3호	300	400	500
라.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않고 저장사업을 개시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1호	2,000	2,500	3,000
마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2호	1,000	1,500	2,000
바.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누출 관련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4호	200	300	400
사.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을 받지 않은 기술 및 제품에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	법 제54조 제1항제3호	500	700	1,000
아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·검사 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4조 제2항제5호	100	150	200